

연합신학전문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 시행규칙은 연합신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에 규정한 내용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학 (개정 2014. 4. 21)

제 2 조 < 삭제 2018. 12. 12.>

제 3 조 (응시자 구비서류) 대학원의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4.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 4 조 (입학절차)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서류전형
3. 필기시험(또는 구술시험)
4. 면접
5. 입학사정
6. 합격자 발표
7. 입학등록

제 5 조 (입학전형구분)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특별전형에 의한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일반전형 합격자가 50%에 미달되었을 때는 그 인원을 특별전형으로 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

제 6 조 (일반전형방법) ① 석사과정의 일반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영어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6)

② 박사과정의 일반전형은 서류 심사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영어, 전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6, 2018. 12. 12.)

제 7 조 (특별전형 지원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전형에 지원 할 수 있다.

1. 목사 안수 후 4년 이상 목회 및 이에 준하는 분야의 경력자 (개정 2009. 3. 1)
2. 신학박사(Th. D.) 또는 철학박사(Ph. D.)를 취득한 자가 목회학 박사(D.Min.)과정에 지원한 자(개정 2018. 12. 12.)

제 8 조 (특별전형방법)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제 9 조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제 10 조 (편입학 지원자격)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편입전 대학원에서의 정규등록 학기 수와 이수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다.

학 위 과 정	편입학기	지 원 자 격	
		정규등록학기수	이수학점
석 사 과 정	2	1학기이상	6학점이상
	3	2학기이상	12학점이상
박 사 과 정	2	1학기이상	6학점이상
	3	2학기이상	12학점이상
	4	3학기이상	18학점이상

제 11조 (편입학전형) 편입학 전형은 특별전형방법에 준하여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12조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편입 전 대학원의 학점은 편입학생의 입학 전에 해당학과 교수회의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단,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중 M.Div 3년 과정의 경우, 36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5. 4. 22)

석사과정		석사과정(M.Div 3년과정에 한함)		박사과정	
편입학기	학점인정	편입학기	학점인정	편입학기	학점인정
2	6	2	12	2	6
3	12	3	24	3	12
4	18	4	36	4	18

제 13조 (사정원칙) 사정원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4조 (입학등록) 합격증서를 받은 자는 소정기간에 입학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 15조 (합격취소) 총장은 합격자중 학력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와 등록미필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한다.

제 3 장 등록 · 휴학 · 재입학 · 복학

제 16조 (등록) ① 각 학위과정생은 학칙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등록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 학칙 제10조제2항에 의한 수업연한 단축에 따라 정규등록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9. 5. 14)

② 수강신청학점 수에 따라 정규등록금의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을 학점등록이라 한다.(개정 2019. 5. 14)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논문준비 등을 위하여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을 연구등록이라 한다.(개정 2019. 5. 14)

1. (삭제 2019. 5. 14)

2. (삭제 2019. 5. 14)

3. (삭제 2019. 5. 14)

제 17조 (수업연한 초과자의 학점등록) 수업연한을 초과하였으나 미수료인 상태에서 교과목을 신청하는 학생은 신청학점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 2019. 5. 14)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 : 해당 학기 수업료 전액

제 17조의 2 (연구등록) 대학원생은 수료 후 논문심사를 진행하는 학기에 한하여 소정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14)

제 18조 (휴학) ① 정규등록을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려는 자는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기 개시 4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는 자의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이월된다.

제19조 (재입학) ①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또는 납부금 미납으로 제적된 자 중 재입학 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 할 수 있다.

② 재입학 자는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재 입학원을 제출하고 해당 학기 재입학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재 입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제적전의 수료학기를 재입학 후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20조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 ②항 해당자로서 휴학학기 등록금을 이월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이 있을 경우 차액분만을 납부한다. (개정 2015. 1. 26)

제 4 장 교육과정 및 수업

제21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통합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개정 2009. 3. 1, 2019. 5. 14)

② 대학원 공통필수인 논문작성법을 포함한 공통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연합신학전문 대학원 학칙 제19조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19. 5. 14)

③ 주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통합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공통과목 이수학점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5. 14)

제22조 (교과목설정의 변경) 설정된 교과목의 변경은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을 개설 하기 6개월 이전에 이를 대학원통합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 5. 14)

제23조 < 삭제 2018. 12. 12.>

제24조 (폐강기준) 개설교과목의 수강신청자가 3인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폐강한다.

① 개설된 교과목의 수강생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0. 3. 1)

② 제1항에 따라 폐강이 예정된 과목이 운영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담당 전임교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 3. 1)

제25조 (수강교과목신청 및 시기)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은 개강 일주일전까지 주임 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수강신청학점 제한) 과정별 매 학기 수강신청학점은 다음과 같다.

1. 목회신학석사학위(M.Div.) 3년 과정 학생은 매 학기 15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1)

2. 목회신학석사학위(M.Div.) 2년 과정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1)

3. 신학석사학위(M.T.S.,Th.M.) 학위과정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1)

4. 목회신학박사(D. Min.)학위과정 및 철학박사(Ph. D.)학위과정 학생은 매 학기 9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1)

제27조 (수강교과목 변경) 수강신청변경은 수강한 교과목을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 교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구 교과목 담당교수, 주임 교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담당교수제청) ① 주임교수는 개설교과목과 교과목 담당교수를 1학기는 전년도 12월말, 2학기는 당년도 6월말까지 확정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② 주임교수는 신규강사 제청 시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 (담당교과목수의 제한) <삭제 2013. 3. 1>

제30조 (전공변경) ① 전공변경은 동일계열 내에서 1학기(첫 번째 학기를 말한다) 이수 후 2학기(두 번째 학기를 말한다) 등록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이수학점은 신전공의 교과 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2.)

② 전공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전공 변경원과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시험 및 성적

제31조 (교과목 성적표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기에 시행한 교과목시험의 성적표를 1학기는 6월말, 2학기는 12월말까지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교과목 성적의 정정)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표에 누락 등 착오가 있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해당교수는 해당시험지 등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교과목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재수강) ① 성적평가가 F인 교과목은 1회에 한하여 동일교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한 교과목의 첫 수강 시 학점은 말소되며, 평점평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재수강을 신청하는 필수과목이 폐강되는 경우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대학원장이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 (수료증의 발급)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말에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5조 (시험부정행위의 처벌)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시험을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장 학사 지도

제36조 (주임교수)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제37조 (주임교수의 직무) 주임교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사절차의 관장
2. 학과교수회의 소집 및 관장
3. 학위논문지도교수 및 학위논문심사위원의 제청
4. 기타 학과내규 시행에 관한 사항

제38조 (학과교수회의) ① 학과교수회의의 구성은 학과소속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과내규 제정·개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 설정에 관한 사항
3. 입학시험 및 전공시험의 출제와 출제위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교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
5. 신규강사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회의소집 : 학과교수회의의 소집은 소속교수 전원의 요청이 있을 때 학과주임교수가 소집한다.
- ④ 의결 : 학과교수회의의 의결은 재적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②항 1호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⑤ 보고절차 : 관장업무와 관련된 의결사항은 소속교수 전원의 날인을 거쳐 각 학과 주임교수가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 ⑥ 학과내규 : 학과교수회의는 학과 특성에 따라 다음 사항을 내규로 결정하여 공포 하여야 한다.
 1. 교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험과목에 관한 사항
 3. 입학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7 장 외국인 학생

제39조 (전형인원) 각 학과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법 시행령에서 정원 외 입학이 허가된 교포 및 재외국민 자녀에 대하여는 학칙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적정인원을 전형할 수 있다.

제40조 (전형절차) 정원 외 입학자의 전형은 서류심사, 면접시험에 의해 전형할 수 있다. 다만, 전공분야의 성격상 일정 수준이상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과의 지원자에게는 별도의 한국어시험을 부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6)

제 8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41조 (공개강좌 및 위탁교육)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교의 부속 기관에 위탁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42조 (전형위원 및 절차) 각 학과의 적정인원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전형하며, 전형위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3조 (연구생 지원서류) 각 과정 연구생의 지원 서류는 소정의 지원서와 최종학력 증명서로 한다.

제44조 (연구생의 연구연한) 연구생의 연구연한은 2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6)

제45조 (연구생의 실적증명 발급) 연구생의 연구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실 적 증명을 발급한다.

제 9 장 외국어시험

제46조 (시험과목) ① 외국어시험 과목은 전공영어로 하고, 전공영어는 전공 외국어(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현대 외국어중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 2014. 4. 21)

② <삭제 2014. 4. 21>

③ <삭제 2014. 4. 21>

제47조 (시험시기 및 응시횟수) 외국어시험은 3월, 9월에 실시하며,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재학연한 중 매 학기 응시할 수 있다.

제48조 (수험료) <삭제 2020. 3. 1>

제49조 (출제위원)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해당 교수에게 위촉한다. (개정 2014. 4. 21)

제50조 (합격기준) 외국어 시험의 합격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16. 9. 1.)

제 10 장 종합 시험

제51조 (응시자격) ①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 21, 2015. 4. 22)

1. 목회신학석사(M.Div.)학위 3년 과정 :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목회신학석사(M.Div.)학위 2년 과정 및 신학석사(M.T.S., Th.M.)학위과정 : 3학기 이상 등록한 자
 3. 목회신학박사(D.Min.) 및 철학박사(Ph.D.)학위과정 :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 ②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3과목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3. 1)
- ③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전공 영역별 심화시험으로 한다. (신설 2009. 3. 1)

제52조 (시험시기) 종합시험은 4월, 10월에 시행한다.

제53조 (수험료) <삭제 2020. 3. 1>

제54조 (출제위원 및 출제) ① 출제위원은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출제위원은 학과별 교수회의에서 선정한다.

제55조 (시험진행 및 채점) 종합시험과 채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56조 (합격기준) 각 과목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 11 장 학 위 논 문

제57조 (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제3학기, 박사학위과정 및 M.Div. 3년 과정 학생은 제4학기 등록 1개월 이내에, 주임교수가 제청한다. (개정 2014. 4. 21)

- ② 한 학기에 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석사학위과정은 6인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4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4. 4. 21)

제58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논문 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 21)

- ①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 ②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 ③ 대학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59조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0조 <삭제 2019. 5. 14>

제61조 (제출자격) 학위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항 해당자여야 한다.

- ①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B(3.0)이상인 자
- ②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③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 ④ 석사 4학기 이상, 박사 6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제62조 (학위논문 대체)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 중 졸업논문 대신 대학원장 승인 후에 전공과목 중에서 2과목(6학점)을 추가이수하면 졸업논문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단, 기 수료생의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3.1)

제63조 (학위논문제출 신청절차) 학위논문제출 신청자는 해당학기의 지정 기일 내에 다음의 구비사항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통
- 나. 심사용 논문 3부(박사 5부)
- 다.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 라. 논문 심사료

제64조 (학위논문심사위원회 구성)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교내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수 중에서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3인으로 위촉한다. 단,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위원 1인(타 대학 전임교수 또는 학계 권위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1)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5인으로하며,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내 관련분야 전임교수 3인과 외부위원 2인(타 대학 전임교수 또는 학계 권위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1)

제65조 (학위논문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결에 있어 심사 위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66조 (심사위원 교체금지) 학위논문예비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 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신상의 사유로 교체가 부득이할 경우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교체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7조 (학위논문 예비심사) ① 주임교수는 학위논문을 접수한 즉시 각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고 심사 일정을 통지한 후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 ② 학위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1회 이상 논문 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논문제출 자에게 예비심사에 필요한 부분, 역분, 모형, 기타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 자는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제68조 (학위논문 본 심사) ① 본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참석으로 각 전공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행한다.

② 본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의 수정,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69조 (학위논문 합격판정) 학위논문 합격판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70조 (학위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수합하여 학위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71조 (학위논문의 재심)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논문 제출자는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재심은 해당학기 경과 후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재학연한 내에 재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는 제67조, 제68조에 준 한다. (개정 2012. 3. 1)

제72조 (학위논문 제출) 논문제출 자는 학위논문 본 심사에 합격한 후 최종논문 파일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 2019. 5. 14., 2023. 2. 6.)

부 칙

- 1. 이 학칙시행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이 학칙시행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4)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통교과목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21조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공통교과목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논문작성법 수강을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이를 이수할 수 있다.

③ (연구등록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16조 및 제17조의 2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연구등록금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6)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